

	<b>가정통신문</b> <b>가정폭력 예방교육</b>	<b>남원용성중학교</b> 주 소 : 남원시 춘향로 73번지 ( <a href="http://www.nwys.ms.kr">http://www.nwys.ms.kr</a> ) 교무실 : (063) 633-4549 팩 스 : (063) 631-4734
---	----------------------------------	---

##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준속폭행, 협박, 준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빙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 가정폭력 신고처벌기준

###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7. 28.

남 원 용 성 중 학 교

